

② 개정조문

<지방세특례제한법>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58조(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) ① ~ ③ (생략) ④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.</p> <p>1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<u>취득세의 100분의 50</u>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</p> <p>2.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<u>재산세의 100분의 35</u>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5의 범</p>	<p>제58조(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취득세의 100분의 50</u>[수도권(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)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]을 2028년 12월 31일----- ---.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 부동산</u>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[수도권(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)에 소재하</p>